

# 1.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747호 1998. 4. 1.

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으로 하던 것을 5년 이상인 보험으로 기간을 단축하고,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. 〈법제처 제공〉

## 주 요 내 용

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25조제1항제1호중 “7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  
 제155조제1항중 “1년”을 각각 “2년”으로, “총리령”을 “재정경제부령”으로 한다.  
 제5조제3항·제5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2조 제15호, 제16조제4항,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9조 단서, 제32조제4항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·제8호나목·제12호다목, 제40조의2제1항제2호, 제4항, 제48조제4호·

제5호·제9호 단서, 제51조제2항, 제53조제2항 산식·제4항제1호 및 제2호, 제55조제2항제3호·제4항, 제56조제2항제2호·제5항·제6항, 제57조제4항, 제58조제5항·제6항, 제59조제4항, 제60조제3항, 제61조제1항제2호·제2항, 제62조제1항 후단·제2항 본문·제4항제3호·제7항,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·제2호·제2항 본문·제4항 본문 및 제3호·제5항, 제64조제2항 본문, 제65조제2항, 제67조제5항 제2호, 제69조 후단, 제73조제4항, 제74조제2호, 제75조제2항 본문, 제78조제5호, 제79조제4항, 제84조제3항·제4항제1호 단서, 제85조제1항

본문 · 제2항, 제86조제1항, 제89조제2항제2호, 제90조제4호, 제92조제1항제2호, 제94조제1항 · 2항, 제86조제1항, 제89조제2항제2호, 제90조제4호, 제92조제1항제2호, 제94조제1항 · 제2항, 제97조제1항 본문, 제98조제2항제2호, 제106조제1항 본문 · 제7항, 제107조제2항 전단, 제109조 본문, 제110조제2항, 제113조제1항 본문, 제114조제2항 본문, 제116조, 제117조제2항, 제118조제3항 본문, 제121조의2제2항, 제123조제4호, 제125조제1항, 제127조제1항 · 제2항, 제130조제1항 · 제3항, 제131조제2항 · 제4항, 제132조제2항, 제133조제1항, 제135조, 제136조, 제137조제3항, 제138조제1항 · 제2항, 제141조제1항, 제145조제2항, 제148조제4항, 제149조의2제3항 · 제6항, 제150조제2항 · 제5항제153조제4항제1호나목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· 제3호, 제155조제10항제1호 및 제4호나목 · 제13항 본문 및 제4호 · 제14항 · 제15항,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, 제162조제1항제3호 본문, 제163조제3항제4호 · 제5항제2호, 제164조제7항, 제16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 · 제2항 · 제3항제1호 및 제2호, 제165조제6항, 제169조 본문, 제170조, 제173조제1항 · 제2항제2호, 제175조의2제4항, 제179조제1항제8호, 제185조제1항, 제187조제3항 · 제6항 본문 및 단서, 제192조제1항 본문, 제193조제1항, 제195조제3항, 제196조제1항 본문, 제199조제1항, 제200조

제1항 전단 · 제3항, 제201조제2항, 제201조의2제1항 · 제6항, 제201조의3제1항 · 제2항, 제201조의4제1항, 제205조제1항, 제206호제1한, 제209조제1항 · 제2항 제211조제2항제3호, 제212조제1항 전단, 제213조제1항 · 제2항 · 제2항, 제214조제1항제4호 ·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, 제215조제3항,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17조 전단, 제222조, 제224조제1항 본문 · 제2항제1호 및 제3호 · 제3항 전단 · 제4항 후단중 “총리령”을 각각 “재정경제부령”으로 한다.  
제38조제1항제8호가목 · 제4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5조의2제6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”을 각각 “재정경제부장관”으로 한다.  
제40조의2제1항제2호중 “문화체육부장관”을 “문화관광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(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)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